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08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허성무 · 구자근 · 김기현
김문수 · 민홍철 · 김태선
강명구 · 김재원 · 김태호
김종양 · 서천호 · 윤영석
정점식 · 추경호 · 김상훈
최수진 · 최혁진 · 박성민
최형두 · 정진욱 · 김상욱
윤한홍 · 박희승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와 연동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과 함께 기업의 총 조세 부담을 구성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 산업기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바, 법인세와 연동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이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실제 체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3조의20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3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3천억원 초과	56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나. 가목 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제103조의20(세율) ① ----- ----- ----- ----- -----.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 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 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 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 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 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에 있는 내국법인의 경 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의 1천분의 1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3억9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천분의 22)</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천억원 초과</td><td style="text-align: center;">65억5천800만원 + (3천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3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3천억원 초과	56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나. 가목 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2. (생략)

②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